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12. 12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1. 3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11. 30.
- 다. 상정일자 : 제84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위원회(2001.12.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수부 지적과장)

가.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본 조례의 제호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함.
- 우리구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자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 위원위촉에 관한 조항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3. 근거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5.16 대통령령 제 16184호)제 1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중 "자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하며, 제2조제3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으로", 제3조제8호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자 중 관내거주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1.28법률 제6237호) 제12조의2규정과 동법시행령(2000.5.16대통령령 제 16814호)제 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조례 제3조(위원위촉) 제1항~제7항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가 ?
- 답변요지(김수부 지적과장) :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8항이 신설되는 것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제3조 제8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하였는데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있는가 ?

- 답변요지(조성대 도시관리국장) : 상위법령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위촉토록 규정하였기에 신설하는 것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시민단체의 참여와 유도를 하기위함 인가 ?
- 답변요지(김수부 지적과장) : 그렇게 생각함.
- 질의요지(박영길위원) : 우리구 시민단체중 규정에 적합한 시민단체 현황은 ?
- 답변요지(김수부 지적과장) :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정수와 구성은 ?
- 답변요지(김수부 지적과장) : 현재 위원수는 13명이며 당연직인 공무원이 4명이며 위촉위원이 9명임.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01.11.30

제출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본 조례의 제호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우리구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 다. 위원위촉에 관한 조항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3. 개정 근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 5.16 대통령령 제16814호) 제14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1. 10. 20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1. 11. 30)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 관내 거주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2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p>
<p>제3조(위원 위촉) 위원은 자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 7.(생략) (신설)</p>	<p>제3조(위원 위촉)-----</p> <p>1. ~ 7.(현행과 같음)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 관내 거주자</p>